

분당차병원 시설환경안전관리 규정

제정: 2015.03.11

제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(이하 “병원”이라 한다)의 병원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검사요건을 준수하며, 주요 지침과 세부 추진사항을 통하여 각종 사고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더불어 사고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병원 근무자 및 입원·외래환자 및 내원객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정책)

- ① 병원은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관리 및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한다.
- ② 시설물 재난발생의 예방과 환자, 직원안전 및 시설물 대책을 심의하고 개선활동을 통해 안전한 시설환경관리를 위해 병원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.
- ③ 병원안전관리위원회는 「위원회 내규」에 의한다.
- ④ 소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,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⑤ 병원의 시설환경사고발생시 발생원인 및 보고서 작성 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경위를 보고한다.
- ⑥ 병원은 가스안전관리, 전기안전관리, 방화관리 등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시설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세부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- ⑦ 병원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,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안전 관리활동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- ⑧ 특수부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.
- ⑨ 설비시스템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한다.
- ⑩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운영한다.
- ⑪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.
- ⑫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, 전염병,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, 대비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.
- ⑬ 산업안전보건관련 사항은 [안전보건관리규정]을 따른다.

제 3조 (책임 한계 및 업무 구분)

- ① 병원 내 시설물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, 직무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임을 한다.

제2장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

제 4조 (목적)

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관련 법규 및 검사요건을 준수하며,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병원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, 보호자, 모든 내원객 및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함이다.

제 5조 (정책)

- ① 병원은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- ②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계획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 한다.
 1. 시설안전관련법령에 의한 안전점검계획
 2. 병원 내 시설물의 유지, 보수, 개선에 관한 계획 및 예산 계획
 3. 시설 및 환경안전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
- ③ 유지, 보수, 개선계획은 점검 또는 진단 시 발견된 시설상의 문제점이나, 각 부서에서 요청한 시설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유지, 보수, 개선계획을 수립한다.

제 6조 (절차)

시설 및 안전관리 절차는 [시설환경안전관리 지침] 및 관련법령을 따른다.
시설 및 환경안전교육은 [시설환경안전관리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]을 따른다.

제3장 화재안전관리

제 7조 (목적)

환자, 직원 및 방문객을 화재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.

제 8조 (정책)

- ① 병원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- ② 병원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적절한 소화활동을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, 소화설비(스프링클러 설비 등), 피난(유도등 등)설비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병원은 1항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관련법규에 맞게 점검 및 유지 하여야 한다.
- ④ 병원은 방화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의 규정에 충족하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시설을 유지, 관리 하여야 한다.
- ⑤ 방화관리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⑥ 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⑦ 기타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따른다.

제 9조 (절차)

화재안전 관리 절차는 「소방계획서」와 [화재안전관리 지침] 및 관련법령을 따른다.

제4장 특수부서 시설안전관리

제 10조 (목적)

특수부서는 의료기관의 중요한 시설로서 특수부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함으로서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함에 있다.

제 11조 (정의)

병원에서 특수부서는 수술실, 인공신장실, 중환자실, 회복실, 응급실, 분만실, 신생아실, 신생아집중치료실등을 말한다.

제 12조 (정책)

- ① 병원은 특수부서 시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- ② 특수부서 시설안전관리계획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 한다.
 - 1. 특수부서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
 - 2. 특수부서 시설물의 유지, 보수, 개선에 관한 계획 및 예산 계획

제 13조 (절차)

특수부서 시설안전관리 절차는 [특수부서 시설안전관리 계획서]와 [특수부서 시설안전관리 지침] 및 관련법령을 따른다.

제5장 설비시스템 관리

제 14조 (목적)

전기설비, 급수설비, 의료가스설비, 공기조화설비 등 설비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 및 유지, 보수 활동을 통해 설비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5조 (정책)

- ① 병원은 설비시스템 감시체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- ② 전기설비, 급수설비, 의료가스설비, 공기조화설비, 폐수처리설비 등 설비시스템의 관리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한다.
- ③ 수변 전 설비, 비상발전설비, UPS설비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, 보수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등으로 인한 전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.
- ④ 급수설비, 오배수 설비, 의료가스설비, 폐수처리설비, 공기조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, 보수를 시행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관리 한다.
- ⑤ 병원은 수질환경보전법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폐수처리를 통해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방류한다.

- ⑥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
- ⑦ 도시가스배관은 정기점검을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관리한다.
- ⑧ 태풍발생시 바람에 의한 시설물 피해 및 비피해가 없도록 외곽 안전순찰 및 점검을 실시한다.
- ⑨ 집중호우 및 탄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배수펌프 및 배수로 점검을 실시하고, 80mm/h이상 호우 발생 시 시설팀 및 시설유지보수업체와 연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.
- ⑩ 지진 및 건물 붕괴 시 유관기관에 비상연락을 하고 [재난관리지침]에 따라 신속히 조치한다.

제 16조 (절차)

설비시스템 관리 절차는 [설비시스템 관리지침]에 따른다.

제6장 안전보안관리

제 17조 (목적)

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,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안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함이다.

제 18조 (정책)

- ① 보안업무 범위는 경비, 보안 및 안내업무 등으로 한다.
- ② 병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관리 계획이 체계화 되어 있다.
- ③ 보안직원 조직관리 및 보안근무 프로세서가 수립되어 있다.
- ④ 고객서비스향상 관련 업무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업무, 안내방송 및 안전업무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

제 19조 (절차)

- ① 업무범위: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업무는 일반보안 업무와 고객서비스 업무로 구분한다.
- ② 보고체계
- ③ 내원객 출입관리 및 위험인물 출입통제
- ④ 통제구역 및 야간출입구 관리
- ⑤ 모니터링 시스템
- ⑥ 순찰방법 및 순찰일정
- ⑦ 인원 및 문서 보안사고 관리
- ⑧ 병원 폭력 및 폭행 사고 관리: 대처방법, 재발방지대책, 보고 및 신고체계
- ⑨ 도난 및 분실사고 방지: 대처방법, 재발방지대책, 보고 및 신고체계
- ⑩ 기타 세부 관련 사항은 [안전보안관리 지침]에 따른다.

제7장 위험물질관리

제 20조 (목적)

병원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누출 및 노출 시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환자, 직원 및 내원객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다.

제 21조 (정책)

- ① 병원은 위험물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
- ② 병원에서 사용 중인 위험물질과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는 국내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한다.
- ③ 관리가 필요한 위험물질은 목록을 정리한다.

제 22조 (적용)

- ① 위험물질관리 대상은 유해화학물질, 의료폐기물, 사업장폐기물, 방사성물질로 구분한다.
- ②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,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.
- ③ 방사성물질은 원자력안전법 따라 구분하고 관리한다.
- ④ 유해화학물질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제를 말하는 것으로 '산업안전보건법'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화학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한다.

제 23조 (절차)

해당 위험물질의 세부절차는 관련세부지침에 따라 관리한다.

제8장 재난관리

제 24조 (목적)

지역사회 응급재난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, 전염병,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응급재난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.

제 25조 (정책)

- ① 재해의 규모 및 유형, 지리적 위치, 해당지역의 응급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여 재난발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.
- ② 재해대책은 재해의 현장, 후송 및 병원을 있는 연계선상에 기초하여 재해의 유형과 손상의 종류에 따라 실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형별 행동지침을 수립한다.
- ③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관리계획에 따라 년1회 모의훈련을 실시한다.
- ④ 재난발생 시 대응계획은 현재 병원의 의료진 수와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 의료진과 약품 및 물품 등의 수를 결정하며 그 이상의 재난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유관기관 및 협력병원 등과 협조하여 환자를 분배하도록 한다.

제 26조 (절차)

재난관리 절차는 [재난관리 지침]에 따른다.

제9장 금연관리

제 27조 (목적)

환자와 내,외부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법령의 이행을 확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.

제 28조 (정책)

- ①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병원은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의료진이 흡연을 처방한 환자는 흡연장소로 안내한다.
- ② 금연구역 내에 흡연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54호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
제 29조 (절차)

금연관리 절차는 [금연관리 지침]에 따른다.

부 칙

병원의 시설환경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